



CSA Summit Korea 2013

“Secure Working on the Cloud”

클라우드 서비스의 법률적 쟁점과 이슈

김앤장법률사무소
이창범

목 차

- I. 클라우드서비스 법적 성격
- II. 클라우드서비스 사업자의 책임
- III.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자의 보호
- IV. 클라우드서비스 활성화



I. 클라우드서비스 법적 성격

I. 클라우드서비스 법적 성격

1.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정의

- 클라우드 컴퓨팅
: 집적·공유된 정보통신기기, 정보통신설비,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(가상화기술보다 물리적시설에 초점)
-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
: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(商用)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이용하게 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I. 클라우드서비스 법적 성격

2.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계약의 법적 성격

- IT서비스 이용계약
 - 임대차
 - 위임.위탁
 - 임차
 - 도급
 - 매매
- 복합계약



I. 클라우드서비스 법적 성격

3.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의 법적 지위

- 전기통신사업자
-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
-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
- 주요기반시설 관리자
- 개인정보처리자
- 개인정보 취급업무 수탁자
- 온라인서비스제공자

II. 클라우드서비스 사업자의 책임

II. 클라우드 사업자의 책임

1.

전기통신사업자로서의 책임

*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

- 부가통신사업
 - 신고 : 미래창조과학부
 - * 신고 간주 : 기간통신사업자, 자본금 1억 이하
 - 사업의 휴지.폐지 : 이용자통지/미래부 신고 (30일 전)
 - 법인해산 : 미래부 신고(지체없이)
- 클라우드서비스
 - 별도의 신고제 또는 등록제 미도입
 - 서비스 장애.중단, 사업종료 통지 의무화

II. 클라우드 사업자의 책임

2.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의 책임

* 정보통신망법
제2조제1항제3호

- 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
 - 보호조치, ISMS 인증(일일평균이용자 100만이상, 전년도 매출액 100억이상), CISO 지정, 침해사고 신고(미래부)
- 청소년 보호
 -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(일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, 전년도 매출액 10억 이상)
-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
 - 임시조치 의무, 불법정보 제거 노력

II. 클라우드 사업자의 책임

3. 집적정보 통신시설 사업자로서 의 책임

* 정보통신망법
제46조

- 책임보험 가입
 - 집적정보통신시설의 멸실, 훼손, 그 밖의 운영장애로 발생한 피해 보상
- 보호조치
 -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조치기준(고시)
- ISMS 인증
- 침해사고 신고(미래부)
- 사고정보 제공
- 장애발생시 긴급대응 등
 - 서비스 중단 및 중단사유등통지(시설이용자)



II. 클라우드 사업자의 책임

4. 주요 정보기반 관리자로서의 책임

*정보통신기반보호법
제8조(소관 중앙행정
기관지정)

- 취약점 분석.평가
 - 취약점 분석.평가 기준
- 보호대책 수립.시행
 - 물리적.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관리대책, 기반보호지침
- 정보보호책임자 지정
- 침해사고 통지
 - 관계행정기관, 수사기관, KISA
- 복구 및 보호 조치



II. 클라우드 사업자의 책임

5.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의 책임(B2C)

* 정보통신망법
제2조제1항제3호

- 개인정보 수집.이용.제공 동의
- 민감정보 수집제한
- 주민번호 수집제한
-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지정
- 개인정보취급방침 공개
- 기술적.관리적 보호조치
- 누출등 통지.신고
- 이용내역 통지
- 장기 미이용자 개인정보 파기
- 이용자 권리보호(동의철회, 정정.삭제 등)



II. 클라우드 사업자의 책임

5. 개인정보 취급업무 수탁자로서의 책임(B2B2C)

* 정보통신망법
제25조

- 수탁자의 책임
 - 위탁업무 목적외 개인정보 취급 금지
 - 위탁자에 관한 규정 포괄적 준용
- 위탁자의 책임
 - 위탁업무 및 수탁자 이름 고지.공개
 - 이용자의 사전 동의
 - 수탁자에 대한 관리.감독
 - 수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 (↔선임상의 책임)

II. 클라우드 사업자의 책임

6.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의 책임

* 저작권법
제102~104조

- 일반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
(인터넷접속, 캐싱, 호스팅, 정보검색 서비스)
 - 저작권침해 저작물등의 복제.전송 중단
 - 복제.전송중단통지(복제.전송자/권리주장자)
- 특수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
(다른 사람 상호간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
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: P2P, 웹하드 등)
 -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 사업 등록
: 미래창조과학부
 - 불법적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

Ⅲ.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자 보호

Ⅲ. 클라우드 이용자 보호

1. 서비스의 가용성. 안정성 확보

- 이슈 & 쟁점
 - 서비스 품질 유지 곤란
 - 장애 판단 및 신속 복구 곤란(분쟁화 위험)
 - 불공정 계약.약관(면책조항 등)
- 법적 대책
 - 클라우드서비스 품질.성능기준 고시(권고)
 - SLA(Service Level Agreement)
: 장애의 판단기준, 서비스 성능기준 등 서비스의 내용.범위.품질 등의 정량화
 - 계약서에 정보의 중복저장(제3자 임치 등) 명시
 - 서비스 장애.중단 통지.신고(국정원)
 - 표준약관(계약서) 사용 권고
: 복구책임, 손해배상, 면책범위 등



Ⅲ. 클라우드 이용자 보호

2. 네트워크의 안전성. 보안성 보장

- 이슈 & 쟁점
 - 해킹
 - 사이버 공격(테러)
 - 사이버 산업스파이
- 법적 대책
 - 정보보호기준 고시(권고)
 - 정보보호 지침(권고)(망법)
 - ISMS 인증(망법)
 - 취약점 분석.평가(기반보호법)
 - 침해사고 통지.신고(망법)(미래부, 국정원)
 - 이용자 정보 유출 통지.신고(미래부, 국정원)

Ⅲ. 클라우드 이용자 보호

3. 영업비밀. 개인정보 보호

- 이슈 & 쟁점
 - 중요정보의 해외 이전
 - 사업자에 의한 비밀.개인정보 침해
 - 수사기관 등의 압수.수색
 - 영장없는 수사 및 수사협조
- 법적 대책
 - 중요정보 국외이전 금지(방법)
 - 이용자 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목적외 이용 금지
 - 이용자 정보 암호화 및 접근통제
 - 압수.수색 등에 대한 통지의무 부여
 - 개인정보 보호 의무 (처리자 or 수탁자)



Ⅲ. 클라우드 이용자 보호

4. 정보의 이전성. 호환성 보장

- 이슈 & 쟁점
 -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권 약화 (특히 B2B2C에서 C의 법적 지위)
 - 특정 사업자에 대한 종속화 (서비스 자유로운 선택권 제약)
 - 정보의 Portability 저하
- 법적 대책
 - 정보 반환 및 파기 의무 (계약 or 사업 종료)
*but, End user의 정보 반환.파기 요구권 불인정
 -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권고
 - 사업종료 통지 의무
 - 이용자의 정보이전(portability) 요구권

Ⅲ. 클라우드 이용자 보호

5. 신속.적절한 피해구제

- 이슈 & 쟁점
 - 다수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(B2B2C에서 End user는 계약관계 부재)
 - 서비스의 복잡.다단계화
 - 피해의 대규모 가능성
- 법적 대책
 - End user 권리 보호장치 (특히 기업 이용자 파산시)
 - 입증책임의 전환
 -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(IDC)

Ⅲ. 클라우드 이용자 보호

6. 이용자의 정보공개 요구권

- 이슈 & 쟁점
 - 이용자 정보의 국외 이전 발생
 - 국외 이전 정보의 보호 취약
 - 국외 이전에 대한 선택권 보장
- 법적 대책
 - 정보 저장 국가의 **명칭 공개 요구권**
 -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여부 확인 요구권
 -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권(망법)

Ⅲ. 클라우드 이용자 보호

7. 준거법 및 관할권

- 이슈 & 쟁점
 -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의 등장
 - 여러 국가에 걸친 데이터 유량
 - 새로운 국제법 원칙의 미구축
- 법적 대책
 - (민사) 계약서에 준거법 및 재판 관할 명확화
 - (행정/형사) 글로벌 기업 에게도 국내법 적용 가능성 (특히 개인정보)



IV. 클라우드서비스 활성화

IV. 클라우드서비스 활성화

1. 민간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촉진

- 전산설비 등 구비 간주
 - 법령에서 인가.허가.등록.지정 등
요건으로 전산설비 등 구비
의무화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
클라우드서비스 이용시 해당
전산설비 등을 갖춘 것으로 간주

IV. 클라우드서비스 활성화

2.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촉진

- 공공기관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허용
 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가능
 - 클라우드서비스 도입 유도를 위해 국가정보화사업 관련 예산편성시 우선고려
 - 공공기관용 클라우드서비스에 대한 국정원의 적합성 인증

IV. 클라우드서비스 활성화

3. 연구개발등 지원

- 연구개발 지원
- 시범사업 실시
- 세제상 지원
- 중소기업 지원
- 전문인력 양성
- 해외진출 촉진
- 클라우드기술 기반 IDC 구축 지원
등

감사합니다!



CSA
Summit Korea 2013
Secure Working on the Cloud

